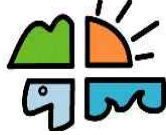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공  보

제713호 2012년 7월 27일(금)

조 례

- 속초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2
- 속초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 8
-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 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 지원 조례..... 18
- 속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0

회 람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

2012년 7월 27일

속초시 조례 제2297호

속초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속초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로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 ①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

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시행으로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추계대상으로 한다.

④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 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4조(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명시한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소요비용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

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의 재원조달 방안은 국비, 지방비, 민간부문 또는 해외부문 등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은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의 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발의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 결과

다. 재원조달 방안

3. 작성자

작성자	<예시 1> 속초시 ○○○실(과) ○○○○○과장 ○○○ <예시 2> ○○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연락처	(033) 000 -000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0000년)	2차년도 (0000년)	3차년도 (0000년)	4차년도 (0000년)	5차년도 (0000년)	계
세 입							
△△△△							
△△△△							
△△△△							
세 출							
△△△△							
△△△△							
△△△△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제5항 중 제○호 등)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4. 작성자

작성자	<예시 1> 속초시 ○○○실(과) ○○○○과장 ○○○ <예시 2> ○○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연락처	(033) 000 -0000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

2012년 7월 27일

속초시조례 제2298호

속초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

속초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속초시 직제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실·과·단·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에 따라 분야별 관련 회의를 개최할 경우 7명 이하로 구성하며, 그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시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가 및 강원도와 연계되는 중요 시책의 검토 및 시행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로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심의·결정이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조정·자문·조언·권고·건의 등을 말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제안설명 및 의견청취) ① 안건을 제출하는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이유 및 개요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실비변상) 위촉직 위원에게는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속초시민제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시정조정위원회”를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② 속초시상징물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속초시정조정위원회」”를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로 한다.

③ 속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속초시시정조정위원회”를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로 한다.

④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속초시정조정위원회”를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심의번호		주관부서		제안일시	
심의안건					
제안요지					
결 정 을 요 하 는 사 항					
관계법규					
참고사항 첨 부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단·소장 (인)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 귀중

210mm×297mm(일반용지60g/m²)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

2012년 7월 27일

속초시조례 제2299호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위원회”를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를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항 제1호중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본문중 “각 호의 규정에 의거”를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조 제3항중 “제2호의 규정에 의거”를 “제2호에 따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조 중 “1인”을 “1명”으로, “2인”을 “2명”으로, “3인”을 “3명”으로 “5인”을 “5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법 제8조제1항에 규정하는”을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란 한다)제8조제1항에 따른”으로, “제8조의2 규정에 의한”을 “제8조의2에 따른”로 하고, 같은항 제2호중 “제8조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하며, 같은조 제3항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를 “총괄”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집”을 “소집”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제1호중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7항에 따른”으로, “제8조제11항”을 “제8조제12항”으로 하고, 같은항 제2호·제3호 중 “규정에 의한”을 각각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항 제4호중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를 “제23조부터 법 제29조 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같은조 제3항제2호중 “있었던 자와”를 “있었던 사람과”로 하고, 같은조 제4항 중 “계산에 있어서”를 “계산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행하게 하기”를 “수행하기”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속초시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u>자</u>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속초시 의회의원 1인과 소속공무원 1인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의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의 회의를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u>당해</u>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2조(구성) ①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명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u>사람</u>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속초시 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의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속초시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u>해당</u>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업의 승인

4. <u>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u>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생략) <신설>	4. <u>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u>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u>제3조의2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u>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u>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②속초시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u>규정에</u>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u>전임자의 잔임기간</u>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u>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u> 연임할 수 있다. ② 속초시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u>규정에도</u>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u>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u>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u>사고가 있을때에는</u>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u>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u>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u>수집</u>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u>소집</u>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 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속초시각중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	---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

2012년 7월 27일

속초시조례 제2300호

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대표축제인 설악문화제 및 그 밖의 축제 육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립·운영) 사단법인 설악문화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와 위원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의 위탁) 속초시장은(이하“시장”이라 한다)는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축제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설악문화제

② 그 밖에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및 문화행사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축제준비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 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매회계연도 3개월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사업연도마다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지도) 시장은 위원회에 대하여 시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와 회계 및 재산 등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정관 또는 「민법」 및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

2012년 7월 27일

속초시조례 제2301호

속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서 위임한 속초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원”이란 속초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
에 따라 속초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
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속초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
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속초문화원장의 책무) 속초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속초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①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된다.

② 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현황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시장은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 등의 정산)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등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종료 후 14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의 계상) 시장은 매년 예산에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